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추가 이행기간 운영지침

2019. 9.

관계부처 합동

목 차

Ⅰ. 기본방향 ····· 1

Ⅱ. 단계별 세부 운영 방안 ····· 2

1 추가 이행기간 부여 대상 ····· 2

2 신청처 작성 ····· 3

3 접수·평가 ····· 4

Ⅲ. 후속 조치 방안 ····· 5

[붙임 1] : 추가 이행기간 신청서 ····· 6

[붙임 2] : 추가 이행기간 신청서 작성 예시 ····· 8

[붙임 3] : 제도개선 과제 추가 연장 적용 ····· 9

Ⅰ. 기본방향

기본원칙	적법화 진행농가에 한해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

《 추가 이행기간 운영 행정 절차 》

신청서 작성	◈ 지자체는 '19.9.27까지 **추가 이행기간 부여 대상 농가 확정, 지역축협과 협조하여 농가의 추가 이행기간 신청서 작성** * **지자체에서 신청서 초안을 작성하여 지역축협에 전달, 지역축협이 대상 농가 방문 및 농가 확인을 거쳐서 신청서 보완** ◈ 지자체는 **추가 이행기간 부여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**에 대해 제외사실 **통보 및 이의 신청 기간 부여(9.27일까지)**
접수 및 평가	◈ 농가는 지역축협의 지원을 받아서 신청서 제출 ◈ **지자체는 지역협의체를 활용, 접수된 농가의 신청서를 검토**하여 **농가별로 실제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 평가** * **접수 및 평가는 2주간** 하되, 지자체 **업무사정**에 따라 **연장 가능** ◈ **추가 이행기간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의 이의신청**이 있는 경우, **지역협의체**에서 이의신청 **심사 후 최종 확정 통보**
이행기간 부여	◈ **9.30일을 기산일로** 하여 **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**

《 적법화 지원을 위한 주체별 역할 》

정부	◈ **관계부처 · 공공기관 T/F**를 운영하여 매월 지자체 **이행상황 점검 및 현장 애로사항 해소** 지원
지자체	◈ 지자체는 대상농가 선정, 대상농가 대면심사 일정, 이의신청 심사 등을 위한 **평가 운영계획 사전 수립**(9.16일까지) - 신청서 작성·지원을 위해 **지자체·지역축협 업무지원 협의체 구성** ◈ 지자체 **지역협의체**를 통해 매월 농가별 이행상황 점검·관리, **관계부처·공공기관 T/F에 결과 보고** 및 필요시 **애로사항 건의**
농협 (축산단체)	◈ 축산농가 홍보 및 **현장 컨설팅 등 행정 지원** - 축산농가 적법화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 행정지원

Ⅱ. 단계별 세부 운영 방안

〈 관계부처 합동 이행기간 운영지침, '18.3 〉

◈ 적극 노력하는 농가에 한해 적법화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

○ 추가 이행기간은 기 부여 받은 이행기간(~'19.9.27) 동안 농가의 적법화 노력 여부를 평가하여 실제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

1 추가 이행기간 부여 대상

□ (기본방향) 일률적인 연장 불가, 적법화 진행농가 중 이행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 추가 이행기간 부여

□ (대상) 측량 완료, 위반요소 해소* 등 적극 노력하는 진행농가

* 퇴비사 설치,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(타인 토지 침범 부분 사전 철거 등) 등

○ 진행단계(설계계약 완료, 설계도면 작성, 이행강제금 납부 등)에 있는 농가에 대해 추가 이행기간 부여

□ (별도 관리대상) 개발계획 예정 부지, 소송 진행 부지 등에 무허가 축사가 위치하고 있어, 개발계획 확정 등 결정 이후 적법화 진행여부의 판단이 가능한 농가

* 개발계획 예정부지에 포함되어 있는 농가

** 사유지 침범 부분(측량오차 문제)에 대한 소송 진행중인 농가

2 신청서 작성

□ **(정부)** 대상농가 선정 및 추가 이행기간 부여와 관련하여 **지자체별 적용에 편차가 발생**하지 않도록 **운영지침*** **송부**(9월초)

* 추가 이행기간 신청서, 위반유형별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 가이드라인 제시 등

○ 지자체, 농·축협 등을 대상으로 **관계부처 합동 담당자 워크숍**(9.5), 희망 지자체 대상으로 **관계부처 합동 지역설명회 지원** 등

□ **(지자체)** **정부 운영지침**에 따라 대상 농가 선정, 농가별 대면 심사, 이의신청 심사 등 **자체 평가 운영계획 수립**(9.16일까지)

① **농가의 추가 이행기간 신청서 작성 지원**을 위한 **지자체·지역축협 업무지원협의체 구성**(9.16일까지)

② **지자체**에서 **추가 이행기간 부여 대상 농가**를 **확정**하고, **지역축협과 협조**하여 **농가별 추가 이행기간 신청서 작성**(9.27일까지)

* 적법화 신청서 작성은 지자체에서 초안을 작성하고, 지역축협에서 농가를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보완 후 농가 서명(또는 날인)을 받고 지자체에 일괄 제출 대행

③ **지자체**에서 **추가 이행기간 부여 제외 농가**에 대해 제외사실 **통보 및 이의신청 기간 부여**(9.27일까지)

□ **(지역축협)** 축산농가 대상 **적법화 홍보 리플릿 안내**, 농가별 추가 이행기간 신청서(붙임1) **작성 지원**, 신청서 제출 대행 등 **행정 지원**

□ **(축산단체)** 축산농가 대상, 신청서 작성 독려 등 홍보 강화

3 접수 · 평가

□ (신청서 접수) '19.9.30일부터 적법화 신청서를 시·군·구 환경부서*에서 접수

* 읍·면·동에서 접수하는 경우 접수증 발급 후 지체없이 **시·군·구 환경부서로 서류 이송** 조치

□ (평가주체) 지자체별 **지역협의체***에서 농가의 적법화 **노력과 진행상황**(추가 이행기간 신청서)에 대해 **농가별 대면 평가**

* 지자체(축산, 건축, 환경부서), 지역축협, 자산공사·국토공사·농어촌공사, 건축사협회 등 지자체별로 기 구성된 협의체 활용

① (접수·평가기간) 9.30일부터 10일간(2주간) 운영하여 신청서 접수 및 평가하되, **지자체 업무사정에 따라 연장 운영 가능**

② (이의 신청)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지 못한 농가가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, **지역협의체**에서 **심사 후 최종 확정 통보**

□ (추가 이행기간 부여) 9.30일부터 기산하여 농가별로 **실제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**

① 정부에서 제시한 **추가 이행기간 가이드라인을 참고**하여 농가별로 **실제 필요한 기간** 부여

② 별도관리 대상 농가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확정 등 해당 사안별 결정시까지 행정처분을 유예하고, **사안별 결정시기를 감안하여 기간 부여**

* 별도관리 대상 농가에 대한 추가 이행기간은 최초 부여한 이행기간 범위 이내에서 부여

☞ **(지자체별 추가이행기간 적용편차 해소)** 지자체에서 대상농가 및 추가 이행기간 확정 전에 관계부처·공공기관 T/F에 제출, TF에서 **지자체별 추가 이행기간 부여상황 점검, 보완 추진**

Ⅲ. 후속 조치 방안

□ (관리방안)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협의체를 통해 추가 이행기간 동안 농가별 적법화 추진상황 관리

○ 지자체(지역협의체)는 농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, 관계부처·공공기관 T/F에 점검결과 보고 및 애로사항 건의(월 1회)

○ 지자체내에 부서(축산, 환경, 건축, 민원부서 등)간 기 구성·운영하고 있는 적법화 지원 T/F도 추가 이행기간 종료 시까지 필히 연장 운영

* 우수사례) 영주시는 무허가 축사 **상시T/F(인허가팀)을 구성**, 신속한 **원스톱 건축행정** 처리

□ (관계부처 · 공공기관 T/F) 매월 지자체 추진상황 점검, 현장 애로사항 해소 지원, 필요시 합동 현장 점검 추진

* 관계부처(농식품부 , 국조실, 행안부, 기재부, 국토부, 환경부 등), 공공기관(자산공사, 국토공사, 농어촌공사, 건축사협회, 농협, 축산환경관리원) 관계자로 구성

○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과제의 적용기한도 추가 이행기간 종료시까지 연장 적용

붙임 1	추가 이행기간 신청서

<table>
<tr><td>주소</td><td colspan="2">①</td><td>소유주</td><td>②(인)</td><td>축종</td><td>③</td></tr>
<tr><td>축사면적</td><td colspan="2">④</td><td colspan="2">위반면적(무허가)</td><td colspan="2">⑤</td></tr>
<tr><td colspan="3">⑥</td><td colspan="4">⑦</td></tr>
<tr><td colspan="3">항공사진</td><td colspan="4">건축물배치도(또는 지적도)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⑧
위반
내용</td><td colspan="3">타 대지 침범</td><td colspan="3">기타 위반 사항</td></tr>
<tr><td></td><td colspan="2">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⑨진행
상황
(9.27일
기준)</td><td>설계계약 완료</td><td colspan="2">설계도면 작성</td><td>이행강제금납부</td><td colspan="2">건축인허가 접수</td></tr>
<tr><td>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⑩
추가
이행
기간
(부여
사유)</td><td colspan="6">총 개월(만료일 :)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</td><td colspan="2">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</td><td colspan="2">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⑪
조치
계획
(축산
농가)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⑫
점검
결과
(지자체)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/table>

◆ 추가 이행기간 부여 적법화 관리카드 작성 방법

① 주소 : 사업장 주소(소재지) 직접기재

② 소유주 : 사업장 대표명 직접기재

③ 축종 : 소·돼지·말·닭 외 가축분뇨법 상 사육동물을 직접기재

④ 축사면적 : 가축분뇨배출시설 전체 면적

⑤ 위반면적 : 가축분뇨배출시설 중 허가(또는 신고)를 득하지 않은 면적

⑥ 항공사진 : **국토정보지리원** 인터넷 홈페이지(http://www.ngii.go.kr/) 하단 자주찾는서비스 중 **항공사진·지도받기 메뉴**를 클릭하여 신청인 사업장 항공사진 또는 **인터넷 지도서비스**(네이버, 다음 등)의 **위성사진** 내려받기

⑦ 건물배치도(또는 지적도) : 오토캐드 프로그램에서 건물배치도(또는 지적도)를 그림파일로 내보내기 또는 출력된 도면을 스캔 후 그림파일로 변환

⑧ 위반내용

- 타 대지 침범 : **국·공유지 및 개인 토지**를 구분하여 **침범면적, 해당 지목, 소유기관 등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기재**
- 기타 위반 사항 : 건폐율 초과, 대지안의 공지 규정 위반, 진입로 미확보 등 **타 대지 침범 그외 위반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**

⑨ 진행상황 : 9.27일 기준, **완료한 행위**에 "○" 표기

⑩ 추가 이행기간 : ⑧ 위반사항 해소를 위해 실제 완료에 **필요한 기간, 적법화 방안(자세하게 기재), 최종 만료일 기재**

⑪ 조치계획 : 추가 이행기간 내 월별 적법화 추진(조치) 계획을 상세하게 기재

⑫ 점검결과 : **지자체는 매월 지역협의체를 개최**하여 농가별 이행계획에 따른 조치사항을 점검하고, **관계부처·공공기관 T/F에 점검결과 보고 및 필요시 애로사항 건의**

붙임 2 **추가 이행기간 신청서 작성 예시**

주소	0000	소유주	000(인)	축종	한우
축사면적	1,000㎡	위반면적(무허가)	500㎡		

항공사진

건축물배치도(또는 지적도)

위반 내용	타 대지 침범		기타 위반 사항
	국공유지	•침범면적 : 100㎡ •지목 : 구거 •소유기관 : 농어촌공사	•건폐율 초과 : 현재 44%(계획관리지역 기준 40%) * 구거매입 시 건폐율 문제 해소 •구거 내 무허가 축사 위치

진행 상황 (9.27일 기준)	설계계약 완료	설계도면 작성	이행강제금 납부	건축인허가 접수
		○		

추가 이행 기간 (부여 사유)	총 6개월(만료일 : `20.3.31.)		
	①구거 매각 (해소기간 : 2개월)	②대체구거 조성 (해소기간 : 2개월)	③건축허가(신고) (해소기간 : 2개월)
	•매각 절차에 필요한 소요 기간	•대체구거 조성 •자산 인계 · 인수 •농어촌공사 기부채납	•기타 위반사항 해소 및 건축인허가 완료

조치 계획 (축산 농가)	`19. 10월	`19. 11월	`19. 12월	`20. 1월	`20. 2월	`20. 3월
	•매각 심의	•매각 결정 완료	•대체구거 조성 •기부채납	•자산 인계 인수	•기타 위반 요소 해소	•건축인허가 •적법화 완료

점검 결과 (지자체)	`19. 10월	`19. 11월	`19. 12월	`20. 1월	`20. 2월	`20. 3월

붙임 3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개선과제 추가 연장 적용

□ ［관련 근거］ 관계부처 합동 이행기간 운영지침*('18.3)

*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고 동 기간동안 적법화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, 적법화 완료가 어려워 추가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가의 노력과 진행상황을 평가하여 실제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

□ ［적용방안］ 이행기간(9.27)까지 적용되는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 추가 이행기간까지 적용기한 연장

○ (대상과제) 42개 과제 중 적용기한 연장이 필요한 32개 과제

○ (적용기한) 농가별로 부여되는 추가 이행기간까지 적용

○ (적용대상) 추가 이행기간(+α)을 부여받은 농가에 한해 적용

［ 관계부처 합동 제도개선 과제현황 ］

연번	제도개선 과제	적용기한	
		당초	조정
1	이행강제금 경감기간 연장	▸'19. 9. 27일까지 - 단, 가축사육제한구역 외 소규모 농가(3단계)는 '24.3.24일까지	▸추가 이행 기간 까지 - 좌동
2	이행강제금 지자체 조례로 추가 경감	▸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기한까지	▸좌동
3	국유재산 사용요율 인하	▸ 제한기한 없음	▸좌동
4	지목변경 없이 농경지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	▸ '19. 9. 27일까지 - 단, 가축사육제한구역 외 소규모 농가(3단계)는 '24.3.24일까지	▸추가 이행 기간 까지 - 좌동
5	원상복구 없이 산지전용 허용	▸ '19. 9. 27일까지 - 단, 가축사육제한구역 외 소규모 농가(3단계)는 '24.3.24일까지	▸추가 이행 기간 까지 - 좌동
6	주민동의서 징구 생략	▸ 제한기한 없음	▸좌동
7	두 필지 면적합계 기준으로 건폐율 적용대지 인정	▸ '19. 9. 27일까지 - 단, 가축사육제한구역 외 소규모 농가(3단계)는 '24.3.24일까지	▸추가 이행 기간 까지 - 좌동
8	가설건축물 H빔 철골구조 허용	▸ '19. 9. 27일까지 - 단, 가축사육제한구역 외 소규모 농가(3단계)는 '24.3.24일까지	▸추가 이행 기간 까지 - 좌동

연번	제도개선 과제	적용기한	
		당초	조정
9	착유세척시설 건축면적에서 제외	▶ ‘19. 9. 27일까지 - 단, 가축사육제한구역 외 소규모 농가(3단계)는 ‘24.3.24일까지	▶추가 이행 기간 까지 - 좌동
10	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면적에서 제외	▶ ‘19. 9. 27일까지 - 단, 가축사육제한구역 외 소규모 농가(3단계)는 ‘24.3.24일까지	▶추가 이행 기간 까지 - 좌동
11	적법화 기간동안 퇴비사에 대해 건폐율 적용 제외	▶ ‘19. 9. 27일까지 - 단, 가축사육제한구역 외 소규모 농가(3단계)는 ‘24.3.24일까지	▶추가 이행 기간 까지 - 좌동
	개발제한구역 내 축사와 퇴비사 용도를 구분하여 면적 적용	▶ ‘19. 9. 27일까지 - 단, 가축사육제한구역 외 소규모 농가(3단계)는 ‘24.3.24일까지	▶추가 이행 기간 까지 - 좌동
12	농수로(구거) 위에 위치한 축사 적법화	▶ ‘19. 9. 27일까지 - 단, 가축사육제한구역 외 소규모 농가(3단계)는 ‘24.3.24일까지	▶추가 이행 기간 까지 - 좌동
13	수질오염총량제 적용	▶ ‘19. 9. 27일까지 - 단, 가축사육제한구역 외 소규모 농가(3단계)는 ‘24.3.24일까지	▶추가 이행 기간 까지 - 좌동
14	일부 면적 무허가는 축사 설계 도면 생략, 감리 면제	▶ ‘19. 9. 27일까지 - 단, 가축사육제한구역 외 소규모 농가(3단계)는 ‘24.3.24일까지	▶추가 이행 기간 까지 - 좌동
15	수변구역 미 편입 부분 적법화 지원	▶ ‘19. 9. 27일까지 - 단, 가축사육제한구역 외 소규모 농가(3단계)는 ‘24.3.24일까지	▶추가 이행 기간 까지 - 좌동
16	국토부에서 지자체 건축부서에 Q&A 적용 공문 조치	▶ 제한기한 없음	▶좌동
17	적법화 추진 협조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서신 발송	▶ 제한기한 없음	▶좌동
18	가축사육거리제한 정부 권고안 재 시행	▶ 제한기한 없음	▶좌동
19	개발행위허가 시 축사 부지의 경사도 적용 제외	▶ ‘19. 9. 27일까지 - 단, 가축사육제한구역 외 소규모 농가(3단계)는 ‘24.3.24일까지	▶추가 이행 기간 까지 - 좌동
20	건폐율 지자체 조례 개정 권고	▶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기한까지	▶좌동
21	대지경계선 축사와의 이격거리 완화	▶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기한까지	▶좌동
22	운영중인 축사 부지의 개발행위허가 제외	▶ ‘19. 9. 27일까지 - 단, 가축사육제한구역 외 소규모 농가(3단계)는 ‘24.3.24일까지	▶추가 이행 기간 까지 - 좌동
23	축사 진입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	▶ ‘19. 9. 27일까지 - 단, 가축사육제한구역 외 소규모 농가(3단계)는 ‘24.3.24일까지	▶추가 이행 기간 까지 - 좌동
24	공공부지 매각 절차 간소화	▶ ‘19. 9. 27일까지	▶추가 이행 기간 까지 - 좌동

연번	제도개선 과제	적용기한	
		당초	조정
25	행정구역 승격(면 → 동·읍) 시 현행도로 인접 적용	▶ '19. 9. 27일까지 - 단, 가축사육제한구역 외 소규모 농가(3단계)는 '24.3.24일까지	▶추가 이행 기간 까지 - 좌동
26	필지 내 2개의 무허가 축사 중 가능 축사만 적법화 허용	▶ '19. 9. 27일까지 - 단, 가축사육제한구역 외 소규모 농가(3단계)는 '24.3.24일까지	▶추가 이행 기간 까지 - 좌동
27	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증축한 축사 적법화 인정	▶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기한까지	▶좌동
28	축사 철거 후 민원이 없는 다른 부지로 이전 시 사육거리제한 조례 제외	▶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기한까지	▶좌동
29	축사시설 소방법 최소 적용	▶ '19. 9. 27일까지	▶추가 이행 기간 까지
30	타인 토지 임대계약 시 영구임대 요구	▶ '19. 9. 27일까지 - 단, 가축사육제한구역 외 소규모 농가(3단계)는 '24.3.24일까지	▶추가 이행 기간 까지 - 좌동
31	이미 허가받은 축사에서 일부 측량오류 문제 해결	▶ '19. 9. 27일까지 - 단, 가축사육제한구역 외 소규모 농가(3단계)는 '24.3.24일까지	▶추가 이행 기간 까지 - 좌동
32	FTA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장 적법화 대상 포함	▶ '19. 9. 27일까지	▶추가 이행 기간 까지 - 좌동
33	문화재보호구역 내 선별적 적법화 여부 결정	▶ '19. 9. 27일까지	▶추가 이행 기간 까지
34	하천구역 지정 이전 축사에 대한 적법화 여부	▶ 이전계획을 제출하고 이전기간을 부여받은 기한까지 ▶ 폐하천인 경우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농가는 이행 기한까지	▶좌동 ▶추가 이행 기간 까지
35	4대강 수변구역 이전 축사에 대한 적법화 여부	▶ '19. 9. 27일까지	▶추가 이행 기간 까지
36	개발제한구역 내 제한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철거	▶ '19. 9. 27일까지 - 단, 가축사육제한구역 외 소규모 농가(3단계)는 '24.3.24일까지	▶추가 이행 기간 까지 - 좌동
37	적법화가 불가한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	▶ 이전계획을 제출하고 이전기간을 부여받은 기한까지	▶좌동
38	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 지원	▶ '19. .9. 27일까지	▶추가 이행 기간 까지
39	국유지 매각 지침 완화	▶ '19. 9. 27일까지	▶추가 이행 기간 까지
40	기존 퇴비사를 축사로 이용한 경우 적법화 대상 포함	▶ '19. 9. 27일까지	▶추가 이행 기간 까지
41	가축분뇨법상 3년이상 휴업 시점 명확화	▶ '19. 9. 27일까지	▶추가 이행 기간 까지
42	공유지에 무허가 축사가 위치한 경우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수의매각 가능		▶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기간 까지

추가 이행기간(+α 기간) 가이드라인

☞ 〈대상농가〉 적법화 진행중인 농가 중 적극 노력하는 농가(측량 완료 후 위반요소 해소 등 적극적인 노력 의지가 있는 농가) ☞ 〈+α 기간〉 적법화에 실제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
☞ 〈후속조치〉 농가별 적법화 추진상황을 매월 점검하고, 관계부처·공공기관 T/F에 점검결과 보고

미진행농가 → 측량농가 → 초과면적 철거 분뇨처리시설 설치

YES ➡

구분		적법화 진행 절차						행정처리시간	증빙서류
국유지 침범부지	용도폐지 결정	용도폐지 승인	건축설계 등 (1개월)	매각 신청	매각 결정	지사(2개월)	건축인허가 (1~3개월)	4~6개월	용도폐지 접수서류 (지자체)
						본사(3~4개월)		5~8개월	
						기재부(3~5개월)		5~9개월	
					매각 불허 (1~4개월)	침범부분 철거 (1개월)	건축인허가 (1~3개월)	4~9개월	
		용도폐지 불가	건축설계 등 (1개월)	침범부분 철거 (1개월)			건축인허가 (1~3개월)	3~5개월	
개발 예정 관련 부지 (축산단지 포함)	개발 예정	심의위원회 개최 (확정시 까지 행정처분 유예)	개발예정지 미포함	적법화 절차 진행				확정 후 적법화 필요기간	개발예정 계획도 (지자체)
			개발예정지 포함	공사전까지 행정처분 유예(축산단지 포함)				필요시 이전기간 부여	
소송 진행 관련 부지	행정 소송 중	행정 소송 판결 (판결전 까지 행정처분 유예)	승소	적법화 절차 진행				승소 후 적법화 필요기간	소송 진행 서류 (축산농가)
			패소	일부 무허가	침범부분 철거			철거 후 적법화 필요기간	
				전체 무허가	이전 조치			이전기간 부여	
공유지 침범 부지	용도폐지 결정	수의매각 조례 개정 (개정시 까지 행정처분 유예)	개정안 의결	수의 매각	적법화 절차 진행			통과 후 적법화 필요기간	지자체 매각 방침(안) 또는 조례개정(안) (지자체)
			개정안 부결	일반 매각	낙찰		적법화 절차 진행	낙찰후 적법화 필요기간	
					탈락	일부 무허가	침범부분 철거	철거 후 적법화 필요기간	
						전체 무허가	이전 조치	이전기간 부여	
소방시설 미설치	소방 공사 계약	공사 결정	건축설계 등 (1개월)	공사 추진 (1개월)	적법화 절차 진행 (1개월)		건축인허가 (1~3개월)	4~6개월	소방공사 계약서 (축산농가)
			건축설계 등 (1개월)	공사 불허	초과부분 철거 (1개월)		건축인허가 (1~3개월)	3~5개월	
환경평가 미실시	환경영향 평가 계약	환경평가 결정 (1개월)	건축설계 등 (1개월)	공사 추진 (1개월)	적법화 절차 진행 (1개월)		건축인허가 (1~3개월)	5~7개월	환경평가 계약서 (축산농가)
			건축설계 등 (1개월)	미 승인	초과부분 철거 (1개월)		건축인허가 (1~3개월)	4~6개월	
지적재조사 사업 부지	사업계획 공고	지적 재정리						지적재조사 완료후 적법화 필요기간	사업계획 공고 (지자체)
타인토지 침범	매매 계약	매매계약 결정	건축설계 등 (1개월)	인계인수 (3개월)	적법화 절차 진행 (1개월)		건축인허가 (1~3개월)	6~8개월	매매계약 증빙서류 (축산농가)
			건축설계 등 (1개월)	중도 취소 취소(1개월)	초과부분 철거 (1개월)		건축인허가 (1~3개월)	4~6개월	

NO ⇓

행정처분 대상

⇐ NO ~ '19. 9.27일까지 | YES ⇒ 적법화 진행 ⇒ 추가 이행기간(+α 기간) 부여